

## 2015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 참여단체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작가의 미술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에 참여할 작가단체(법인, 팀)를 공모합니다.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작가단체(법인, 팀)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### □ 공모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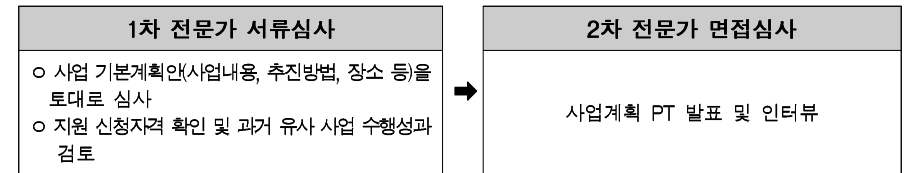
- 공 모 명 : 2015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 참여단체(법인, 팀) 공모
- 추진목적 :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장, 공공 시설, 유희 시설, 문화예술 거리 등에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
- 공모내용

구분	[공모1] 작가단체 미술장터 개설 지원	[공모2] 신진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
지원내용	○ 작가단체의 미술품 판매를 위한 중·대규모 미술장터 개설 지원 ※ '15 5월 - 16 1월에 미술장터를 개설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미술장터를 운영하여야 함	○ 신진작가의 미술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미술장터 개설 지원 ※ '15 5월 - 16 1월에 미술장터를 개설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미술장터를 운영하여야 함
지원신청 자격	① 미술작가로 구성되어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법령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(※ 상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회/지부에서도 신청 가능) ② 미술작가로 구성된 임의단체 (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지원신청 가능)	① 신진작가(* 만 40세 이하,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로 10명 이상 구성된 팀(그룹) ② 신진작가로 구성된 임의단체
지원규모	○ 총 7억원 내에서 5개 단체 내의 지원 - 최대 3억원~최소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원 (예시) 3억원 1개 단체, 1.5억원 1개 단체, 1억원 2개 단체, 0.5억원 1개 단체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자체, 문화재단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감액 지원될 수 있음	○ 총 1억원 내에서 5개 팀(단체) 내의 지원 - 최대 4천만원~최소 1천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원 (예시) 0.4억원 1개 팀, 0.3억원 1개 팀, 0.1억원 3개 팀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자체, 문화재단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감액 지원될 수 있음

지원항목	장터 개설·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(직접경비) 지원 (※ 자부담은 필수사항이 아님)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지원 신청할 수 없는 항목 (공통사항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무실 임대료, 시설개보수, 자산취득비, 전기·수도 등 공공요금</li> <li>○ 단체 운영을 위한 상근 인력 운용비(* 단, 행사 개최를 위해 특별히 선임되는 인력(전시기획자 등) 운용비는 지원 신청 가능)</li> <li>○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</li> <li>○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</li> </ul>
지원 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</li> <li>○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</li> <li>○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, 시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국 공립(시·도·군립) 문화예술기관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</li> <li>○ 문화체육관광부의 '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' 제15조&lt;별표 3&gt;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</li> <li>○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</li> <li>○ 학교 단위의 졸업작품전 등</li> </ul>

### □ 선정방법

-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
- 심사절차



- 심사일정(안)

※ 하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구분	일정	비고
접수기간	공고일 - 2015. 4. 14(화) 18:00	이메일 접수
1차 서면심사	2015. 4. 17(금) 예정	결과발표 : 4. 20(월)
2차 면접심사	2015. 4. 23(목) 예정	최종발표 : 4. 27(월) 예정

※ 결과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단체/법인/팀 개별 연락

- 심사기준

심사지표		가중치	세부심사 내용
계획 단계	사업계획의 구체성/타당성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목적(사업취지)의 이해도 및 부합성</li> <li>○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</li> <li>○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다양성</li> <li>○ 사업예산의 합리적 설정</li> </ul>

집행 단계	단체의 전문성/ 활동실적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한 단체/법인/팀의 전문성</li> <li>○ 신청한 단체/법인/팀의 활동 실적</li> <li>○ 사업 실행을 위한 운영 인력 확보</li> </ul>
	관람객 유치 및 미술품 판매계획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람객 유치계획의 구체성</li> <li>○ 미술품 판매계획의 구체성</li> <li>○ 사업 홍보계획</li> </ul>
성과 단계	사업성과 기대도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</li> </ul>

## □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공고일 - 2015. 4. 14(화), 18:00 마감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[a.market@gokams.or.kr](mailto:a.market@gokams.or.kr))  
(※ 우편, 방문접수 불가 / 이메일·파일 제목은 "2015미술장터개설지원 단체/팀이름"으로 함)
- 제출서류 : 전자파일(한글, 워드, PDF) 형태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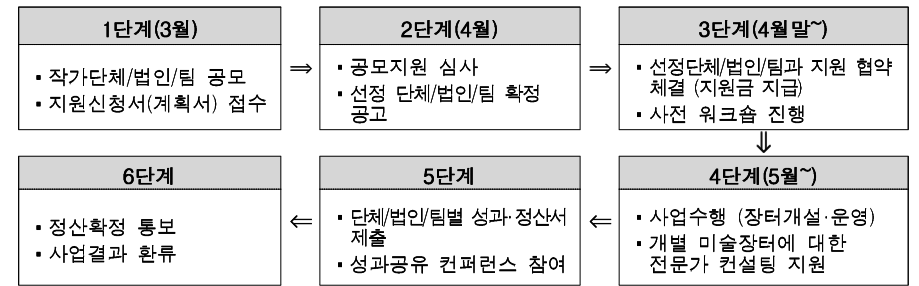
no	필수 제출서류	비고
1	공모 지원신청서(지정서식) 1부	- 예술경영지원센터 ( <a href="http://www.gokams.or.kr">http://www.gokams.or.kr</a> )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 다운로드
2	사업계획서(자유서식) 1부 (A4 10매 이내)	- 붙임 사업계획서(서식) 참고하고 작성 ※ 동 계획서에 관람객 유치 및 미술품 판매계획을 포함할 것
3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고유번호증 중 1부	- [공모2]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
4	기타자료 (* 선택사항) (예: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)	-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가능

- 지원문의 : 예술경영지원센터 (02-708-2252/ [a.market@gokams.or.kr](mailto:a.market@gokams.or.kr))

## 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※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)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
- 지원신청 내용(이력서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지원금은 반납 조치됨

## □ 추진절차



## ※ 참고사항 : 2015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15년 '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'
- 사업기간 : 2015년 3월 - 2016년 2월
- 주최/주관 : 문화체육관광부/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- 사업목적 :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장, 공공시설, 유희시설, 문화예술 거리 등에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
- 기본방향
  - 작가단체·법인·팀 대상 공모·심사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원
  - 기존 아트페어와 차별화하여 미술품 판매금 전부를 참여작가에게 지급함으로써 작가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
  -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을 위한 중저가 위주의 미술품 판매 지원
  - 미술장터에서 구매한 작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구매자의 만족도 제고
- 예상 기대효과
  -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·판매할 수 있는 미술장터 개설 지원을 통해 작가에겐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
  - 미술품이 사치품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작가와 시민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미술문화 저변 확대 유도